스포츠등급분류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23. 1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사격선수에 대한 스포츠등급분류(이하 "등급분류"라 한다)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의 등급분류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등급분류"는 각 종목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스포츠 활동에 선수의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2.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기준(국제스포츠기구의 등급분류기준이 없는 경우 자체 등급분류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등급분류 심사를 실시하여 선수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3. "국내 등급분류사"는 연맹에서 발급한 등급분류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4. "국제 등급분류사"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및 국제경기연맹(IFs) 등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제공하는 공식 교육 절차 등 등급분류사 양성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등급분류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5. "적격 장애"는 각 종목의 장애인 스포츠에 참가 요건으로 지정된 장애 유형을 말한다.
6. "최소 장애기준"은 특정 스포츠 경기 참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애 유형 및 심각도를 말한다.
7. "등급분류기준"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등급분류지침에 따라 각 종목별로 적격 장애 및 최소 장애 기준, 등급 구분 등 등급분류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을 말한다.
8. "국내 등급분류사 자격증"은 연맹에서 등급분류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에 의한 민간자격 등록을 필한 자격증을 말한다.
9. "장애체육인 등록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해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 장애체육인이 각 분야의 활동을 희망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등급분류카드"는 등급분류와 관련한 선수의 장애 유형 및 심각도 등 일련의 정보가 담긴 증서를 말한다.

제3조(등급분류 규정 제정의무) 연맹은 이 규정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국제경기연맹(IFs),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IOSDs)(이하 "국제스포츠기구"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급분류 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등급분류 규정'으로 정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적격 장애 및 최소 장애기준
2. 등급분류 심사 방법
3. 이의신청 절차 등

제4조(등급분류 규정 등의 공지) 연맹은 등급분류 규정과 국제스포츠기구의 등급분류기준(국제스포츠기구의 등급분류기준이 없는 경우는 자체 등급분류기준을 말한다)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맹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 2장 스포츠등급분류위원회 구성

제6조(설치) 연맹은 스포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맹의 자문에 응한다.

1. 등급분류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국제 및 국내 자격취득 지원 등 등급분류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종목별 등급분류사의 자격제도, 양성, 운영 등 제도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등급분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장애인사격종목 국제 또는 국내 등급분류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가맹단체 회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1.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록선수 및 지도자
2. 연맹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위원장과 위원은 가맹단체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국제 또는 국내 등급분류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가맹단체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0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의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연맹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종목의 등급분류사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소집) 연맹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설치) 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된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6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3장 등급분류사 운영 및 양성

제18조(등급분류사 운영) ①연맹은 등급분류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 등급분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연맹은 연맹에서 발급한 국내 등급분류사 자격증 또는 국제 등급분류사 자격을 보유한 등급분류사를 두어야 한다.

제19조(등급분류사 등록) ①연맹은 등급분류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연맹에서 정한 등급분류사로서의 기본정보, 활동실적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장애체육인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추가 등록기간은 가맹단체가 정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등급분류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연맹은 등급분류사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사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제20조(등급분류사 양성 및 교육) ①연맹은 등급분류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등급분류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등급분류사는 그 자격을 유지 또는 승급하기 위하여 연맹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4장 등급분류 운영 및 이의신청

제21조(등급분류 적용) ①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국내 등급분류를 받아 해당 등급분류 결과를 적용 받으며,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국제 등급분류를 받아 해당 국제 등급분류 결과를 적용받는다.
② 선수의 국내 등급분류 결과와 국제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할 경우 국제 등급분류 결과가 우선한다.

제22조(등급분류 심사) ① 연맹은 등급분류 심사방법과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급분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등급분류사는 심사가 완료된 경우 등급분류 심사 관련 자료 원본을 연맹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23조(등급분류 점검) ① 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에 대해 등급분류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각종 국내·외 대회에 등급분류 위원을 파견하거나 경기영상을 통해 선수의 등급분류 관련 사항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③ 각 가맹단체와 선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과 관련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자료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점검 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등급분류 재심사)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사를 지정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회 스포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2. 등급분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3. 그밖에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② 각 가맹단체와 선수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자료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로 인해 등급분류 결과에 변경이 있는 자가 국가대표선수일 경우에는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국가대표 자격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토록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등급분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연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장애인체육회와 연맹에서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 등급분류 판정 또는 재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와 연맹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징계조치) 연맹은 유리한 등급분류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선수에 대해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징계조

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체육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준용

제2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등급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IPC 선수 등급분류지침(IPC Athlete Classification Code)과 국제경기연맹(IFs), 장애유형별 국제스포츠기구(IOSDs)의 등급분류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